

1. 개정이유

폐업 시 일시상환 유예 근거를 중기부 고시로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밖에 사업성평가 등 용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소상공인 폐업 시,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하여 제도화(안 제26조)
- 나.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사업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 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 : 행정예고(2024. 8. 9. ~ 8. 29.)

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를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”(이하 “소진공”이라 한다)이란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용자사업”을 “용자사업(이하 “용자사업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용자원금”을 “용자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”로 한다.

3.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일부는 3개월(또는 1개월)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, 일부를 제외한 대출금액은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

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최근 6개월 이내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경우

2. 그 밖에 신속한 자금 지원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사업성 평가 미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진공의 운영요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0조 중 “연대보증”을 “책임경영이행약정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연대보증”을 “책임경영이행약정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취득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”를 “취득하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3호 중 “그밖”을 “그 밖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은 대출금이자 등을 상환하여야 할 때 부터 지체일수가 3개월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와 이에 따른 일시 전액 상환 요구를 유보할 수 있다.

제30조제1항제3호 중 “그밖”을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「은행업감독규정」 별표3에서 정의한”을 “제31조에 따라 분류한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3호 중 “그밖”을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.</p> <p>2. “<u>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</u>“(이하 “<u>소진공</u>”이라 한다)이란 <u>중소벤처기업부</u>로부터 “<u>소상공인 용자사업</u>“(이하 “<u>용자사업</u>”이라 한다)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</p> <p>3. ~ 13. (생략)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<u>중소벤처기업부</u>에서 소진공에 위탁한 <u>소상공인 용자사업</u>에 대하여 적용하며, 관계법령, 고시·공고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12조(상환방법) ① 채무자는 <u>용자금의 원금</u>을 대출약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<u>대출취급기관</u>에 상환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<u>소상공인기본법</u>」 제2조----- -----.</p> <p>2. “<u>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</u>“(이하 “<u>소진공</u>”이라 한다)이란 <u>법제17조</u>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.</p> <p>3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 <u>용자사업(이하 “용자사업</u>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2조(상환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

<신 설>

② (생 략)
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간 내에서 융자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, 상환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.

1. ~ 3. (생 략)

④ (생 략)

제16조(사업성평가) ① 소진공은 융자신청인의 대출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평가를 실시한다.

<단서 신설>

<신 설>

<신 설>

3.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일부는 3개월(또는 1개월)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, 일부를 제외한 대출금액은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융자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사업성평가) ① -----

-----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최근 6개월 이내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경우

2. 그 밖에 신속한 자금 지원 등

한다.

② (생략)

제26조(기한의 이익 상실) ① 소
진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
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
고, 기일 전이라도 채권회수절
차를 취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그밖에 소진공의 장이 인정
하는 경우

<신설>

② (생략)

제30조(경매참가) ① 소진공은 경
매물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
는 경우 유입 후 처분가능성 등
을 고려하여 경매를 통해 소진
공이 담보물을 직접 매입·처분
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그밖에 소진공의 장이 인정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기한의 이익 상실) ① 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-----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진공
은 대출금이자 등을 상환하여야
할 때부터 지체일수가 3개월에
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
후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와 이
에 따른 일시 전액 상환 요구를
유보할 수 있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30조(경매참가) ①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-----

<p>하는 경우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32조(정리대출금) ① 소진공은 「은행업감독규정」 별표3에서 정의한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이 예상되는 정리대출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채무관계자의 동태와 자산상태 파악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36조(이행촉구) 소진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대출약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촉구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그밖</u>에 소진공과의 거래약정을 위반한 경우</p>	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2조(정리대출금) ① ----- <u>제31조에 따라 분류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6조(이행촉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</u>----- -----</p>
---	--